5. 법인세법중개정법률

법률 제 5,553호 1998. 9. 16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시행일 :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1998.10.1) 〈법제처 제공〉

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2항중 "100분의 20"을 각각 "100분의 22"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발행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택회보